

검 토 보 고 서

-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안 5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현 재)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제출일자 : 2012. 5. 1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 일자 : 2012. 5. 17.

2.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 1. 17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군에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규정 신설 (안 제13조의2)
 -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 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회로 하며, 두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2.3.26~4.14)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 상생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정하므로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2.1.17] [법률 제11175호, 2012.1.17, 일부개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의안 번호	2012-36
----------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제출일자 : 2012. 5. 1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 일자 : 2012. 5. 17.

2. 제안이유

군내 출신이거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군내 제조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애향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고향 거창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고취하고, 군내 제조업체 등의 청년층 취업을 장려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지원대상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나. 추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다. 지원범위 및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장려금 수혜자 군정 홍보요원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타목
 - 중소기업 육성

나. 예산조치 : 2012년 예산확보(10,000천원)

- 기타보상금 (301-12)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2. 4. 24. ~ 5. 14.)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군내 제조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애향장려금을 지원하여 고향을 아끼는 마음을 고취시키고 제조업체 등의 청년층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 이 조례안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내 제조업체 등의 취업을 장려하고 고향사랑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애향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으나, 한 사람당 1회에 500천원 지급으로 소기(所期)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와 취업 대상업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원 대상자 심사에 혼란이 우려될 수 있으나, 군내 제조업체 등에 청년층이 취업을 하여 고향을 아끼는 마음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7.14, 일부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1.7.1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 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 6. (생략)